

4인가구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.16% 인상

- 2024년 생계지원금 인상을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-

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*을 12월 6일(수)부터 12월 18일(월)까지 행정예고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「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」, 「금융재산 기준」

긴급복지지원*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, 주거,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* (지원요청) 관할 시군구(읍면동),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
* (신고)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

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3.16% 인상되어 월 1,833,500원을 지원한다.

<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>

(단위:원/월)

가구구성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2023년	623,300	1,036,800	1,330,400	1,620,200	1,899,200	2,168,300
2024년안*	713,100	1,178,400	1,508,600	1,833,500	2,142,600	2,437,800

*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86,900원 추가 지급

연료비*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.

* 연료비는 긴급복지 생계,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에게 동절기(10월~다음 연도 3월) 지원

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,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한다.

<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>

구분	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현행 (23년 기준)	고시	6,000,000	6,000,000	6,000,000	6,000,000	6,000,000	6,000,000
	지침 (생활준비금*)	2,077,000	3,456,000	4,343,000	5,400,000	6,330,000	7,227,000
개정안 (24년 기준안)	고시 (생활준비금 포함)	8,228,000	9,682,000	10,714,000	11,729,000	12,695,000	13,618,000

(단위 : 원)

* 일상생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

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“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”라고 하면서, “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8일 (월)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.

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(www.mohw.go.kr)→ 정보 → 법령 → 입법/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 의견 제출방법(우편) >

○ 제출처

- 주소 : 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(6층)
- FAX : 044-202-3949

○ 기재사항

-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의견)
- 성명(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 등

<붙임>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요

- <별첨> 1. 「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」 일부개정안
2. 「금융재산 기준」 일부개정안

담당부서	복지정책관	책임자	과 장	정준섭 (044-202-3051)
	기초생활보장과	담당자	사무관	박혜선 (044-202-3058)



- (사업 목적)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
- (지원 대상)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(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)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
 - (위기사유)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,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·부상, 휴·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, 화재·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
 - (소득) 기준 중위소득 75%(1인가구 155만 원, 4인가구 405만 원) 이하 (재산의 합계액*) 대도시 241백만 원, 중소도시 152백만 원,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
 - * 주거용 재산공제 시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
 - (금융재산) 생활준비금(2023년 기준 중위소득) 공제 후 600만 원 이하(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)
- (지원 요청) 관할 시군구(읍면동),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
 - (신고)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
- (지원 내용)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62만 원,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,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,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의료서비스 지원 등